

『재산영농조합법인』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2(월)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3. 6. .
다. 상정일자 : 2003. 6. 26(금) 제103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 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 중
- 2003년에 상환 도래되는 원금 105,880천원에 대하여,
-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 「농어업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지원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장기분할로 지원 받음에 있어
- 2001년 470,000천원, 2002년에 도래되는 원금 134,440천원의 자금대환 조치에 이어 2003년도 도래원금 105,880천원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였음.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한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「성장작목시범 단지조성사업」 융자금 20억원을 '92.6.29일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 '92.7.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'92.8.31일 융자실행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부채경감특별 대책 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,
 - 2001년~2003년까지 3년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(2년거치 5년균분 상환)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 및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에 470,000천원 2002년에 134,440천원에 이어 2003년 도래되는 원금 105,880천원에 대하여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 조치법」 지원을 받아 상환 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함.
 - 본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리는 연리 5% ⇒ 3%로 낮아 짐.
 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부족하고,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.

4. 검 토 결 과

-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
 - 성장작목 투자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, 도비 11억 6,400만원이 간이 집하장, 농산물포장센터·공동퇴비 제조장 및 교육장 각1동에 투자되었음.
-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50억원중 융자액 20억원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'92.6.29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년 7월 14일 채무보증 하였음.

- 금번 채무보증 내용은 2003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 105,880천원에 대하여 「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」을 지원받아 대환하므로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하려는 것임.

- 그간 경영컨설팅을 통한 구조개선과 난방방식 변경등 행정지원과 함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